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동 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천안, 아산 지역 중심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예비학교 한국어 학급 운영, 한국어 교육비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원활한 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상학생 증가, 연중 수시 입국 등으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 다.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집중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 대안교육 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안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맞춤형 교육 운영 및 공교육 진입 강화 필요

나. 위탁기간: 2019년 1월 ~ 2020년 2월

다. 2019년도 사업비 : 도교육청 100백만 원(2개 기관/각 50백만 원)

- (내용별) 교육사업비 100백만 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 라. 위탁사무

-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공교육 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된 기관 협약체결

#### 바.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018년 10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18년 11월
- 민간위탁 사무 위탁 계약: 2018년 12월
- 사업 운영: 2019년 1월 ~ 2020년 2월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최근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일선 학교의 부담 해소를 통하여 능률성을 제고하고,
  -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첨부된 계획서의 공모신청 요건이나 선정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 다문화 학생이 도내 여러 학교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2개의 대안교육기관의 적정 배치 및 학생 수용(합숙 또는 통학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 또한, 민간위탁수립단계에서 사후관리(정산)까지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구체적 과업내용, 관리감독의 기본이 되는 위탁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사업별 편성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 1 | 관계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 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참고 2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계획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기본계획

### I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충청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제4371호

### II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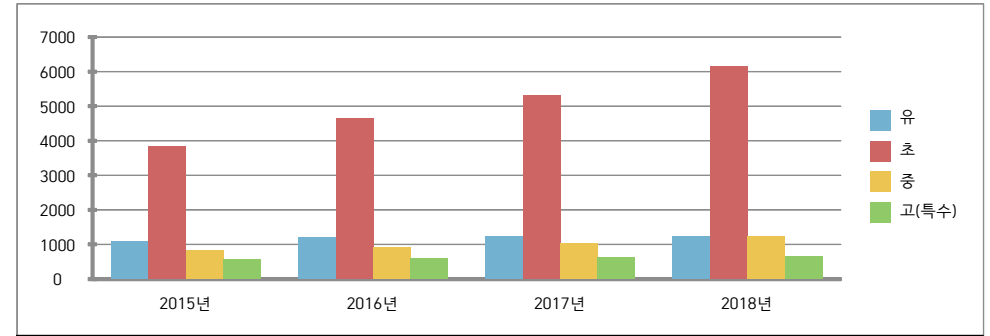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예방
-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모형 개발·적용

## III 현황

### 1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5~2018)

(초·중·고: 2018. 4. 1. 교육부 통계 기준 / 유치원: 자체조사)



구분	유	초	중	고(특수)	합 계	증 감	증감율
2015년	1,079	3,825	839	579	6,322	-	-
2016년	1,214	4,659	932	591	7,396	1,074	17%
2017년	1,228	5,321	1,021	616	8,186	790	11%
2018년	1,246	6,143	1,232	645(34)	9,300	1,114	14%

☞ 2017. 4. 1. 기준 전국대비 충남 다문화가정 학생수 6위, 학생비율 2위

####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발생 현황(2015~2018)

(2015~2017 연도말 기준 / 2018. 8. 기준)

구분	초	중	고	합 계	증 감
2015	37	11	1	49	
2016	121	12	1	134	85
2017	200	21	4	225	91
2018	190	21	2	213	
합 계	548	65	8	621	

☞ 초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천안, 아산지역에 집중해 있고, 당진, 서산 지역도 점차 증가 추세임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총 621명이 발생하여 빠른 증가 추이에 따른 교육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주로 러시아, 중국 계통)

## □ 천안·아산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6~2018)

(2018. 4. 1.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천안	국내출생	738	837	955	173	159	182	114	125	136
	중도입국	61	65	83	21	25	31	13	14	15
	외국인가정	86	152	210	7	22	45	12	7	15
	소 계	885	1,054	1,248	201	206	258	139	146	166
아산	국내출생	498	578	641	96	116	123	54	70	62
	중도입국	39	41	69	8	11	29	10	11	15
	외국인가정	99	154	266	22	47	55	10	7	19
	소 계	636	773	976	126	174	207	74	88	96

☞ 천안, 아산 지역 공단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 및 가정 유입 증가

☞ 천안, 아산 지역의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학생 급증으로 학교 현장의 한국어 학급 교육 대상 과다 입급 및 수시 입급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호소

☞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학생 수 급증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집중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

## 2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2017 지원실적	2018 추진현황 (9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운영	· 한국장학재단 및 지역대학 연계 사업 · 진로 및 학습 등 주제로 대학생과 1:1 멘토링 운영	6개 대학, 261명 지원	7개 대학, 270명 지원
한국어(KSL) 교육 지원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한국어 집중 지도를 위한 <b>예비 학교 한국어학급 운영</b>	16교, (441,220천원)	20교 (653,197천원)
	· 찾아가는 예비학교 강사 지원	11교 (97,760천원)	37교 (68,800천원)
	· 한국어교육 캠프 지원	25교 (65,000천원)	32교 (64,000천원)
	· 중도입국 학생 한국어 교육비 지원	8교 (21,480천원)	8교 (15,900천원)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원격 화상 강의 활용 한국어 교육 지원	2018 신규사업 (시범운영)	2교 (10,000천원)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정서·심리 상담 지원	65명, 521회 전문상담인력 2명	전문상담인력 총 36명 (70,000천원)
다문화 친화적 도서관 운영	· 다문화 독서활동을 통한 감수성 증진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8 신규사업 (시범운영)	7개 기관 (42,900천원)

☞ 예비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큼

-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실 부족
- 한국어학급 학생 정원 초과
- 원격학급 복귀 시 수업 및 생활지도 곤란

### 3 타시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시도	운영기관	학교명	대상	비고
서울	재한몽골학교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중	외국인학교
	(사)한베문화교류센터	다에다문화학교	중	위탁형 예비학교
	(사)지구촌사랑나눔	지구촌학교	중	위탁형 예비학교
인천	공립	인천한누리학교	초·중고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경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모아학교	중고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사회복지법인)	꿈빛학교	중고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고	
	시흥시의국인복지센터	희망나래 학교	중고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중고	
	일산다문화교육본부 (해피월드 복지재단)	누리다문화학교	중고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모두다문화학교	중고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다문화국제 학교	중고	
광주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새날학교	초·중고	
부산	(사)글로벌국제비전센터	글로벌국제학교	중고	
	(사)다문화청소년 교육나눔 사립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중고	
충북	한국 폴리텍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고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 IV 추진방침

-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을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모 심사하여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
- 위탁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며, 위탁교육기간의 출석·수업·평가 결과 등을 모두 소속 학교에서 인정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신입생 선발권이 없으며, 학생을 원적학교에서 수탁 받아 교육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보통교과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 이중언어교육, 인성 및 진로교육, 대안교육 등 실시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별로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장에게 자율성과 책무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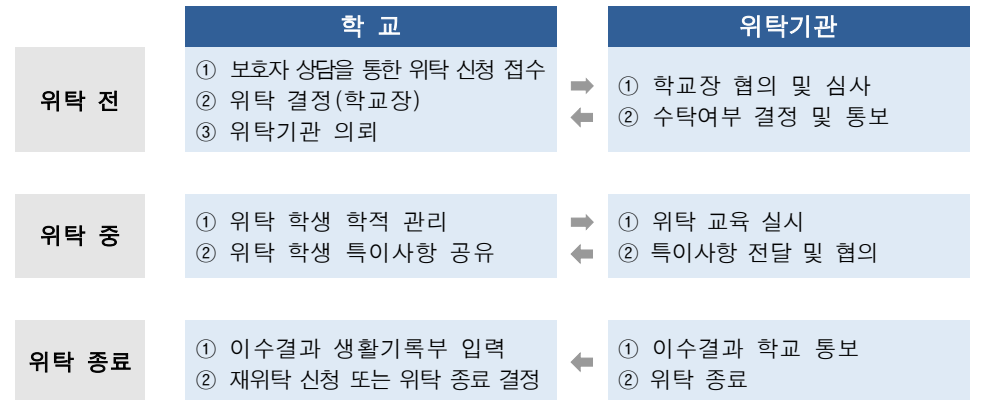
## V 세부 추진 내용

### 1 대상 학생 위탁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하여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

※ 중도입국학생,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국제결혼 가정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이 힘들어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난민가정 자녀

### □ 위탁절차



## 2 위탁 기관 선정

### □ 공모대상기관

- ▶ 충청남도 내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 〈공모 신청 요건〉

- 다문화대안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공교육에서 부적응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적극 수탁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갖춘 기관
-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교육과정운영, 인적자원, 시설 등)을 갖춘 기관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법무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운영기간 : 2019. 1. ~ 2020. 2.(14개월)

□ 지원예산 : 총 100,000천 원(2개 기관 선정)

### □ 지정 절차

절 차	내 용
1 모집공고	공고기간 내 서류 접수(운영 계획 등)
2 심 사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1차: 서류, 2차: 현장방문)
3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 〈선정 기준〉

- 교육목표 또는 이념의 적정성
- 교사(지도자) 확보 기준
-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육 시설 및 교구 확보 기준
-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학사 운영 능력
- 경영의 투명성 및 재정의 건전성(소요재정 확충 방안)
- 운영 예산 확보 현황(타기관 포함) 및 예산운영계획 등
- 기관의 공공성, 기관 운영 실적 등

## 3 업무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2018. 11.	운영 기관 공모 및 선정
2018. 12.	선정기관 점검, 협약(계약) 체결
2019. 1. ~ 2020. 2.	위탁 교육운영 및 현장 컨설팅 지원
2019. 12.	성과평가 실시

## VI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
- 다문화가정 학생의 개성 신장과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비 용 추 계 서**

(단위 : 천원)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 2019. 1. ~ 2020. 2.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100백만 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비 고
민간 위탁금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100,000천 원) :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박혜숙*

구 분		1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00,000	100,000
민간위탁금		100,000	1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100,000	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원조달 계획서

##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계
재원조달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100,000	100,000
기 타(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100,000천 원) :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적응 지원을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